

#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

## 1 보고 근거

-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 - 정관 변경 시, 시장 인가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

## 2 주요 내용

-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 반영
  - 임원의 결격사유 중 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’ 삭제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‘전자증권법’)시행에 따른 개정
  - 채권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
-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개정사항 반영
  - ‘지능형전력망 사업’, ‘전기신사업’, ‘수소산업 관련 사업’을 사업 범위에 추가
  -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교체 지원 근거 마련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개정
  - 노동이사 정수(1명)를 정관에 명시하고 “노동이사”로 용어 변경
-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업무 절차 개선
  -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장이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
  -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사장대리인 선임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생략

## 3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'20. 12. 24. 완료)
-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( 별 첨 )

## 정관 개정 세부내용

### □ 개정 사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('19. 12. 3.) 반영
  - 「지방공기업법」 (제60조)에 따라 지방공기업 전문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
  
- 「전자증권법」 시행('19. 9. 16.)에 따른 개정
  - 「공사채등록법」 폐지 및 「전자증권법」 시행에 따라 실물 증권 발행 대신 전자등록 발행만 가능하므로, 정관 상 채권 전자등록 발행 근거 마련
  
-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개정사항('20. 10. 5.) 반영
  - 에너지관련 법령 제·개정 등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사업 3건 신설
  -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 신설
  - 환경·에너지 분야 신사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'시장이 인정하는 사업' 추가
  -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와의 용어 일치(사회취약계층 → 에너지취약계층)
  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정관 변경
  - 용어 변경(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) 및 노동이사 정수(1명) 명시
  
-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업무 절차 개선
  - 「지방공기업법」 (제58조의2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
  -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리인 선임 시 이사회 의결절차 생략

## □ 개 정 내 용

- 임원의 결격사유 중 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’ 삭제 (제15조 제1항 제1호)
- ‘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등록’ 조항 신설(제39조 제4항)
- 공사 사업 범위에 ‘지능형전력망 사업’, ‘전기신사업’, ‘수소산업 관련 사업’ ‘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’ ‘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’ 추가 (제6조 제1항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, 제11호, 제13호)
- ‘사회취약계층’을 ‘에너지취약계층’으로 용어 변경(제6조 제1항 제10호)
- ‘노동자이사’를 ‘노동이사’로 명칭 변경(제11조 제1항)
- 노동이사 정수 1명을 정관에 명시(제10조 제5항)
-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‘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’ 삭제(제26조)
- 대리인 선임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삭제(제23조)

붙임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 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<b>제6조(사업) ① (생략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</li> <li>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</li> <li>3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</li> <li>4. 환경·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</li> <li>5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</li> <li>6. <u>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</u></li> <li>7. <u>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, 연구, 개발, 교육, 홍보 및 컨설팅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사업</u></li> <li>8. <u>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, 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, 설치, 운영, 대여 및 양도</u></li> <li>9. <u>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</u></li> <li>10. <u>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</u></li> <li>11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</u></li> </ol> <p><b>② (생략)</b></p>	<p><b>제6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</li> <li>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</li> <li>3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</li> <li>4. 환경·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</li> <li>5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</li> <li>6. <u>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</u></li> <li>7. <u>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</u></li> <li>8. <u>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</u></li> <li>9. <u>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(교육홍보, 연구개발, 국내외 협력,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)</u></li> <li>10. <u>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</u></li> <li>11. <u>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</u></li> <li>12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</u></li> <li>13. <u>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</u></li> </ol> <p><b>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

<p><b>제10조(임원) ① ~ ④ (생략)</b></p> <p>⑤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되고, 그 외 비상임이사는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환경 및 에너지 분야 <u>전문가</u>, <u>노동자대표</u> 중에서 선임한다.</p>	<p><b>제10조(임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⑤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과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은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<u>된다</u>. 그 외 비상임이사는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환경 및 에너지 분야 <u>전문가 중에서 4인을 선임하고, 노동자대표 1인을 선임한다</u>.</p>
<p><b>제11조(임기) ①</b>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1조(임기) ①</b>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</u></li> <li>2. 미성년자</li> <li>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</u></li> <li>1. 미성년자</li> <li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3조(대리인의 임명)</b>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3조(대리인의 임명)</b>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</p>

<p><b>제26조(의결사항)</b>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7. <u>사장과</u>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</p> <p>18. (생략)</p> <p>19. (생략)</p>	<p><b>제26조(의결사항)</b>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<del>17. 사장과</del>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</p> <p>17. (생략)</p> <p>18. (생략)</p>
<p><b>제39조(사채의 발행 등)</b> ① ~ 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<b>제39조(사채의 발행 등)</b>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등록한다.</p>
	<p><b>부칙(20 . . .)</b></p> <p>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